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일 | 처리기간 10일 | |
| 신청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 |
| 허가사항 | 전용목적 | | | |
| | 납부기간 | | 고지번호 | |
| |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| 계 | 보전산지 | 준보전산지 |
| | | 원 | 원 | 원 |
| 신청사항 | 연장사유 | | | |
| | 연장기간 | | | |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0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 귀하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